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김 건 · 최수진
김승수 · 고동진 · 조지연
김용태 · 이인선 · 인요한
조정훈 · 서명옥 · 유용원
추경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.

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

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“임기제공무원”을 “임기제공무원,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(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별정직공무원, 임기제공무원 및 군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10조(적용 제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<u>임기제공무원</u> 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제4장에 한정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	3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기제공무원</u> , 「 <u>군인사법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군인(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<u>별정직공무원</u> , <u>임기제공무원</u> 및 <u>군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</u>

<u>②</u> (생략)	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